
취업기간 도과 비전문취업(E-9)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

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 등으로 비전문취업(E-9) 외국인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렵고,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(C-4, E-8)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
이에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(E-9) 외국인에 대하여 기타(G-1)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.

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8월 21일

법무부장관